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6호
----------	------

제출연월일 2004. 11. 2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용료 반환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도로법 제75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 도로법 제75조

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 도로법 ⇒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도로법 ⇒ 법, 조례 제4조 ⇒ 조례 제5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생략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7조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이하 “도로” 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부과징수)①~③(생략)</p> <p>④시장은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조(--)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p> <p>제6조(-----)①~③(현행과 같음)</p> <p>④-----법 제75조-----</p> <p>⑤(현행과 같음)</p> <p>제7조(-----) ----- 제5조-----</p>

관계법령 발취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점용) ①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 개조, 변경, 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1999.1.21>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것 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도로법

第40條 (道路의 占用) ①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物件 기타의 施設을 新設·改築·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工作物·物件 기타의 施設의 種類와 道路의 占用허가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道路의 굴착 기타 形質變更이 수반되는 工事を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地下埋設物(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設置工事を 한 때에는 竣工圖面을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主要地下埋設物이 설치된 道路에 대하여 掘鑿工事を 수반하는 占用 許可를 하는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⑤삭제<1999.2.8>

⑥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主要地下埋設物이 있는 道路의 掘鑿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의 立會하에 施行하여야 한다.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 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第75條 (公益을 爲한 處分)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許可 또는 承認을 받은 者에게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1. 道路의 狀況의 變更으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
2. 道路에 關한 工事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
3. 公益에 對한 危害를 除去하거나 輕減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
4. 公共의 利益이 될 事業을 爲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양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